#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
[대법원 2004. 8. 16. 2004도2977]



## 【판시사항】

자백과 주된 보강증거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, 유죄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는지 여부

## 【참조조문】

[1] 형사소송법 제310조

##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상고인】 검사

【원심판결】울산지법 2004. 4. 30. 선고 2004노127 판결

### 【주문】

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2003. 7. 초순 19:00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.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.

#### [이유]

상고이유를 본다.

- 1.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03. 7. 초순 19:00경 피고인이 연산동 소재 '대일 오토바이 ' 앞길에서 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 0.5g을 3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부분(이하 '이 부분 공소사실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, 피고인은 이를 자백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2003. 6. 초순 일자불상 18:00경 위 연산동 소재 연일다방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음과 동시에 필로폰 0.5g이 든 주사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라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.
- 2.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.
- 가.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,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,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증거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( 대법원 1998. 12. 22. 선고 98도2890 판결, 2001. 9. 28.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).
- 나.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,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제1심과 원심 법정에서, 2003. 6. 말경 공소외 2와 그의 친구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.5g을 100만 원에 판매한 다음인 2003. 7. 초순 19:00경 공소외 2로부터 필로폰 100만 원어치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 0.5g을 받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아 공소외 1의 연산동 소재 농산물가게 내실에서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, 공소외 1로부터의 위 두 번 째 필로폰 구입 일시, 장소에 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, 위 공소외 2는 검찰 진술에 서, 2003. 7. 초순 20:00경 피고인이 공소외 3과 같이 자신의 농산물가게로 찾아와 내실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3에 게 필로폰을 주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0.03q을 자신의 혈관에 주사해 준 일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, 한편 위 공소외 1은 검찰 진술에서, 자신은 2003. 6. 초순 18:00경 및 같은 날 21:00경 두 차례에 걸쳐서 위 연산동 소재 연일다방 앞에서 각 30만 원을 받고 각 필로폰 0.5q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데,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행일자를 특정함에 있어 공소외 1의 진술이 아닌 피고인 및 공소외 2의 위 각 진술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, 나아가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신문에 있어서는 범행일자나 장소보다는 그 무렵 피고인 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,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데다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공소외 1의 진 술의 전체적인 취지도 피고인이 구입하였다고 하는 위 필로폰을 자신이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이에 부 합하고, 다만 그 구체적인 판매의 일시·장소가 피고인의 자백과 다르기는 하나, 위 범행일시 무렵 다수의 사람들에 게 필로폰 판매행위를 일삼아왔던 공소외 1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주된 신문의 대상도 아니었던 위 사항들에 관하여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할 것이어서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이 반드시 피고인의 자백과 모순되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, 또한 비록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2003. 7. 초순경 피고인이 피고 인 3에게 필로폰을 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공소외 2의 진술도 그 필로폰의 출처가 될 수 있는 이 부분 공소사 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,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 고인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존재함은 물론 그 진실성에 대한 보장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.

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 이고,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.

- 3. 원심판결의 나머지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 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.
- 4.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고,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 할 것이나,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, 위 각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,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박재윤(재판장) 조무제 이용우(주심) 이규홍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